

## 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23일

정남면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 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주 *용	주 *용 1980-02-10	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05
이 *한	이 *한 1968-10-02	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05
강 *훈	강 *훈 1983-01-04	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용수길34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4-04